

#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2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(시설의 평가)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무로서,
- 나. 우리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에 개발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적용, 3종 복지관(노인·장애인·사회복지관) 17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위탁기간 : 10개월('16.3.2.~12.31)
- 위탁사무 :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
  - 3종 이용시설(노인·장애인·사회복지관) 175개소에 대한 서울형 시범평가
  - 평가단 구성, 교육, 현장평가 운영
  - 평가지표 설명회 및 현장 종사자 교육
  - 평가지표 추가 개발 및 보완 (지역사회 평판지수 및 환경지수 개발)
  - 소규모시설 및 생활시설 평가지표 개발
  - 우수사례집 발간, 우수사례 인센티브 및 미흡시설 컨설팅(교육 등)

- 소요예산(안) : 338백만원(2016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
- 수의협약 사유
  - 서울시복지재단은 '06년부터 '1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지표개발 및 관련 연구를 통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, 특히 '15년에 서울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한 경험으로 '16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를 적용·보완할 필요가 있음

#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1호
- 필 요 성
  -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축적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
  -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,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(시설의평가)
  -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·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박영용(☎ 2133-7327)